

허가 조건(시설사용)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의 직원후생복지를 위하여 나인프라임푸드(주)(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위탁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 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계약상대자” 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 · 수익허가 재산을 보존 ·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행위제한] “계약상대자” 는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5조 [위탁운영규정] 구내식당 운영위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성북구보건소 구내식당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약정서” 를 체결하여 “보건소” 와 “계약상대자” 가 각자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 성북구보건소 -

위탁급식 운영 약정서

성북구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와 나인프라임푸드(주)(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은 성북구보건소의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약정은 “보건소” 가 “계약상대자” 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보건소” 와 “계약상대자” (이하 “동행” 이라 한다)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및 사용료 등)

- ①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한다.
- ② 다만, “계약상대자” 가 사용허가연장(재계약)을 원할 경우 만료일 2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사용허가(재계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의 재계약요청이 있을 경우 “보건소” 는 전년도 운영상황 및 계약조건 이행실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 의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금 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금2,000,000원(금이백만원)으로 하며 계약 체결 후 납부기한 내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한다.

제3조(계약이행보증금)

이 약정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는 연간 예상 매출액 80,000,000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보험 증권을 “보건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보험증서)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의 운영 시 발생 가능한 화재 등에 대비, 시설 및 장비·인명 피해에 따르는 손해보전 등 운영위탁 범주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산물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급식 운영의 범위)

“보건소”는 “계약상대자”가 구내식당 이용자에게 원활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보건소”로부터 제공 받은 것 이외에 필요한 장비 등을 부담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목 적 물	소 재 지	면 적
구내식당	성북구보건소 9층	146.76㎡
조리기구 및 비품		(별첨) 확인 후 날인

1. 급식(식재료 구입, 조리하는 행위, 가공한 식음료를 구내식당 이용자에게 제공·판매하는 행위 등)에 관한 일체 사항
 2. 주방용품 등 식당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식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검사,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사항
 5. 식당 종사자의 복무·인사·보건·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6. 식당운영 및 급식에 관한 설문조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7. 비상근무 및 각종 내부행사 지원(필요 시 “쌍방”이 협의)
 8. 기타 식당운영과 관련한 신고·교육 등 부대사항 일체
- ※ 구내식당 홀(107.31㎡)은 식사시간 이외,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가능

제6조(비용 및 시설의 부담) “동행”이 부담하는 비용 및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가 부담하는 내용
 - ①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 ② 자산 형성적 비품(식탁, 의자, 주방설비 기설치 된 장비에 한함)
 - ③ 행정전화
2.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내용
 - ① 공공요금(도시가스)
 - ② 직접경비(식재료비, 인건비)
 - ③ 간접경비(급식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운영경비 일체)

- 식재료운반, 교육훈련, 조리기구 취득, 소모품비, 영업신고에 관련된 제반사항 일체, 쓰레기 처리, 방역·방충 비용, 소득비
- ※ 기존장비 이외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한 주방기기 및 장비의 신규설치 변경, 보수비(단, 소유권은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제7조(시설물의 관리 및 공사)

- ① “계약상대자”는 “보건소”가 제공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소”의 재물 조사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선 및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일상적인 급·배수, 냉·난방 전기 등의 시설물 보수는 “보건소”가 시행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보건소”가 제공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내식당 운영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대여·양여·매매·교환 또는 제3자의 담보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계약상대자”는 “보건소”가 제공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개조할 수 없으며, 필요시 “동행”은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구내식당의 구조변경, 시설의 개·보수 및 집기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기기 및 집기류의 소유권은 투자자 측에서 가진다.
- ⑤ 구내식당의 운영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보관·관리하는 집기 및 비품을 훼손 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선, 구입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보건소”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⑥ “계약상대자”는 장비·비품 등에 대하여 물품 목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계약상대자”는 “보건소”가 청사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식당에서 공사를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따른 불가피한 영업상 손실을 감수한다. 단, “보건소”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내용, 기간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설 및 비품은 계약 만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잔존가치를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여 신규업체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 ⑨ “계약상대자”는 “보건소”의 승낙 없이는 “보건소”가 제공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임의 변경·개조 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변경·개조하였을 경우는 “보건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8조(인력의 채용 및 관리)

- ①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채용 관리하되, 인적사항은 “보건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신규인력의 채용 시 채용 신체 검사서에 의해 전염병 및 질병의 감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외에 “보건소”가 별도 요구하는 검진 및 예방접종 등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신분 변동, 인사이동시 “보건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종사자 중 자격미달, 관련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보건소”가 시설에 상주시키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의 책임은 물론, 종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지며 일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성북구 생활임금에 준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 및 안전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상의 사고와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식음료 제공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제반 사고에 대비하여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③ “계약상대자”는 “보건소”가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관련 점검에 적극 응해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잔반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처리 및 수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2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식단)

- ① “계약상대자”는 끼니마다 성인 1식 충족기준 열량의 4찬 이상의 식단을 제공하며 배식은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월(주)단위의 급식식단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월(주) 개시일 2일 전까지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간식단표를 작성하여 매주 금요일까지 식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제출된 식단에 대하여 “보건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다만, 행사·비상근무시의 식단은 사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급식의 범위 및 시간)

- ① “계약상대자”는 “보건소”에 중식, 간식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건소”는 청 내·외의 행사 등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최소 3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행사 내용 및 규모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급식비는 “보건소”의 행사 주관부서와 별도 정산하며 단가는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구내식당의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에 상근하는 근무자에 대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부서 교대 근무자 및 특별근무자 등을 위해 예외 적용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 분	중 식	간 식	행사식 및 기타
평 일	11:30~13:30	13:30 ~ 14:30	사전 협의

제12조(급식인원 및 단가)

- ① 구내식당의 급식예정 인원은 “계약상대자”가 판단하여야 하며 부가세, 위탁수수료를 포함 식당 급식(중식, 간식)단가는 다음과 같다.
 - 가. 중식 단가: 4,800원(10매 이상 구매 시 4,500원)
 - 나. 간식 단가: 4,500원
 - 다. 방문객: “계약상대자”의 임의 판단으로 적용하나 ‘가’항의 식단가보다 낮을 수는 없다
- ② 계약기간 중에는 급식단가를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료비, 인건비 등의 급격한 가격변동 등 급식단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예정일 2월전까지 단가 변경 근거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행” 합의로 조정·변경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구내식당은 일반인의 이용 제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 가. 보건소 주관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한 일반인의 이용
 - 나. 단체, 동호회의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용
 - 다. 그 밖에 “보건소”의 주무부서에서 허가를 득한 경우
- ④ 급식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동행”은 48시간 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

제3장 기타 사항

제13조(고객만족)

- ①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건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문 내용은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보건소”는 계약기간 중 식당운영에 대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급식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설문 조사결과는 위탁급식 운영 약정내용 등의 변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의 매월 정산내역 및 운영실적을 “보건소”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소”는 이용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게시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석)

- ① 이 약정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경우 “동행”이 상호 협의하여 개정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계약을 갱신·보완할 수 있다.
- ②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약정서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대체식)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농성·파업, 시설·장비 등의 예기치 못한 하자 등으로 정상적인 급식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보건소”에 통보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 인력 투입 외 대체 식으로 급식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조속히 정상적인 급식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식권제작 및 사용)

- ① 구내식당 중식 이용은 현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종이식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종이식권을 제작하여 판매한다.

제17조(관리감독)

- ① “보건소”는 “계약상대자”에게 구내식당 운영 실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제출 요구 및 식당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보건소” 는 제1항의 점검·조사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불이행시 재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 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일체를 “계약상대자” 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본 계약 체결 후 “보건소” 와 “계약상대자” 는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구성은 성북구보건소 내 구내식당 이용자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는 “보건소” 의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위원 7~10명과 “계약상대자” 가 지명하는 3인 내외 등 총 10~13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 (생략 가능)으로 하되 필요 시 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식당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식대, 식단운영, 평가 등 식당에 관한 모든 사항
2. 시설의 변경·보수·교체 등 식당 구조와 시설 개선 사항
3. 급식 서비스 요구·개선사항 협의 조정
4. 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 ① “보건소”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잔존가 보상요구는 가능하나, 보건소자체 행정목적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 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 가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경우
 2. “계약상대자” 가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
 3. “보건소” 가 별도 계획에 의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내식당에 대한 직원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계약상대자” 가 제공하는 식단에 대한 응답자의 60점 이상 만족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번의 유예를 주는데, 그 다음 설문조사에도 60점 이상 만족이 나오지 않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위생 및 안전 관리상 문제로 허가관청으로부터 1일 이상의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계약기간 중 업무상 비밀누설, 청결, 건의사항 미반영 등의 이유로 년 2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계약 기간 중 “보건소” 및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과 관련하여 년 2회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서면 시정 요구를 받았을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8. “보건소”의 사정으로 식당을 폐쇄하거나 용도 변경할 경우
 9. 계약기간 중 식중독 발생 및 급식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하여 직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10.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에 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전대·양도한 경우
- ② “계약상대자”는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보건소”에게 해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건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떤 사유로도 손해 배상을 “보건소”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보건소”에게 귀속된다.

제21조(재산반환조치)

- ①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건소”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장비일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③ “보건소”는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제20조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한다.
- ④ “계약상대자”가 원상 회복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보건소”는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22조(보안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청사관리에 따르는 시설 및 종사자의 신원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계약기간 만료 시 운영 중 취득한 보건소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 및 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의 제기 중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은 “보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효력)

- ① 이 약정서의 효력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 되는 때까지 해당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약정사항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보건소”와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9월 10일

“보건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성 북 구 보 건 소 장 (인)

“계약상대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7길 29(역삼동)
나임프라임푸드(주) 대표이사 손 순 형 (인)